

의안번호	2211002
의 퇴 인	이만희 의원
회 답 일	2025. 6. 24.
추 계 번 호	25F3366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농촌특별재난지역에서 창업 등을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
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근거 신설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

국회의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
1	안 제75조의6 (농촌특별재난지역에 대한 감면)	○ 농촌특별재난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·재산세 감면 - 감면율: (취득세) 100% (재산세) 5년간 100% + 3년 50% - 적용기한: 2028.12.31.까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적용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75조의6 (농촌특별재난지역에 대한 감면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에 따라 농촌특별재난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·재산세 감면규정을 신설할 경우 추가적인 세수감소가 예상됨(안 제75조의6)
- 개정안은 농촌특별재난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·재산세 감면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
 - 감면율: (취득세) 100% (재산세) 5년간 100% + 3년 50%
 - 적용기한: 2028. 12. 31.까지 취득한 부동산
 - 농촌특별재난지역은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 중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

제60조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을 의미함

-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은 농업과 인구 지표로 읍·면의 소멸 위험도를 평가하여 지정하는 농촌소멸위험지역으로 2024년 8월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」 발의(의안번호 제3431호, 이만희의원 대표발의), 관련 법령 개정 이후 지정될 예정

□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으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관한 정보, 농촌특별재난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가액 등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나, 이에 대한 합리적인 추정에 어려움이 있어 세수효과를 추계하기 곤란함

-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 지정과 관련된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」이 아직 개정되지 않아 법인·소득세 감면대상 지역이 특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관련 정보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음
- 또한 특정 지역에서의 창업 혹은 사업장의 이전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개별 기업의 의사결정에 따른 것이어서 이를 사전에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함

Ⅲ. 부대의견

☐ 없음

Ⅳ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2과	장설희	백경엽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장설희	02-6788-4836	shjang@assembly.go.kr